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여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당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개정

※ 적용 예시: (현행) 최대 5년 → (개선) 최대 5년 + 최대 2년 + 최대 2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운행의 허가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 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연 락 처	